

현안과제연구
2010. 10. 29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연구수행: 정종관·장창석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정종관·장창석

- 목 차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II. 농공(산업)단지 운영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V. 결론 및 제언	10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으로, 1961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됨
- 현재 산업단지의 분양은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름
- 중요한 산업 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제품의 생산 및 가공활동 과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는데 개별입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업체별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일정한 공간에 많은 업체가 집적하기 때문에 대부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
- 산업(농공)단지의 집적화로 폐수 발생량과 농도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련부서간 불명확한 업무구분으로 인해 시설관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련부서간 업무 관리한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2. 연구목적

-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부서(기업지원 관련부서)와 운영부서(환경 관련부서)간의 합리적인 업무한계 구분
-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자(입주기업체협의회)와의 모범 위·수탁협약서(안) 마련

Ⅱ. 농공(산업)단지 운영

1. 농공(산업)단지 현황

-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임(산업법 제2조제5호)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임
 -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가 유리한 충청 지역은 개발이 활발한 반면에 입지 여건이 불리한 호남, 영남, 강원 지역은 개발이 늦음
 - 이는 그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논산시에는 일반산업단지 3곳과 농공단지 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표 1> 전국 산업(농공)단지 현황

단 위 : 천㎡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전국	계	831	1,365,986
	국가	40	862,687
	일반	382	438,241
	도시첨단	6	720
	농공	403	64,339
충남	계	132	98,189
	국가	5	26,413
	일반	41	58,513
	도시첨단	-	-
	농공	86	13,263

※ 2009 전국산업단지 통계, 예정지역 포함

<표 2> 논산시 산업(농공)단지 현황

단 위 : 천㎡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논산시	계	10	2,296
	국가	-	-
	일반	3	1,476
	도시첨단	-	-
	농공	7	820

※ 2009 전국산업단지 통계, 예정지역 포함

2.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 전국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60개소(시설용량 : 1,064,700㎥/일)로 폐수유입량은 631,588㎥/일로 시설용량 대비 폐수유입율은 59.3%임
- 전국 농공단지에서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6개소(시설용량 : 56,310㎥/일)로 폐수 유입량은 22,781㎥/일로 시설용량 대비 폐수유입율은 40.5%임
-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은 총 53개소(39.0%)로 2007년(53개소, 39.6%)보다 0.6% 감소함
 - 폐수유입률이 저조한 시설(30% 미만)은 44개소(32.4%)로 전년(32.8%) 보다 0.4% 감소
- 이 중 논산지방산업단지와 논산가야곡 농공단지는 자체 처리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각각 1,600톤/일과 340톤/일 임

<표 3> 폐수종말처리장 가동현황

구 분		시설수 (개소)	시설용량 (톤/일)	폐수유입량 (톤/일)	폐수유입율 (%)
'07년도	계	134	1,065,680	627,250	58.9
	산 단	57	1,009,700	604,306	59.9
	농 공	77	55,980	22,944	41.0
'08년도	계	136	1,121,010	654,369	58.4
	산 단	60	1,064,700	631,588	59.3
	농 공	76	56,310	22,781	40.5
증 감	계	2	55,330	27,119	△0.5
	산 단	3	55,000	27,282	△0.6
	농 공	△1	330	△163	△0.5

<표 4> 폐수유입률별 시설 수

구 분		계	70% 이상	60% ~ 70%미만	50% ~ 60%미만	40% ~ 50%미만	30% ~ 40%	30% 미만
'07년도	계	134	21	13	19	21	16	44
	산 단	57	9	5	7	9	8	19
	농 공	77	12	8	12	12	8	25
'08년도	계	136	20	12	21	20	19	44
	산 단	60	8	6	11	5	8	22
	농 공	76	12	6	10	15	11	22
증 감	계	2	△1	△1	2	△1	3	-
	산 단	3	△1	1	4	△4	-	3
	농 공	△1	-	△2	△2	3	3	△3

<표 5> 논산시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구분	시설용량	관리·운영주체	준공년월일	입주업체수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600톤/일	논산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004년 7월	27개
논산가야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340톤/일	논산가야곡농공단지 운영협의회	1993년 12월	20개

3. 운영 및 유지관리비

- 전국의 산업(농공)단지 136개소 중 118개소(87%)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임
 - 재위탁 운영 13개소, 자치단체 미 귀속 5개소 등 18개소(13%)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
- 운영 중인 종말처리시설의 톤당 평균처리비용은 산업단지 360원, 농공단지 896원으로 소규모인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됨
 - 화성 발안 등 15개소는 폐수유입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톤당 처리비용이 3천원 이상으로 과다
- 운영 중인 처리시설 136개소 중 시설재투자비를 적립중인 처리시설은 65개소(48%)이며, 미 적립 처리시설은 71개소(52%)로 나타남

<표 6> 전국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형태

구 분		처리시설 운영형태(개소)				
		계	직영	위탁	재위탁	미귀속
'08년도	계	136	20	98	13	5
	산단	60	5	45	6	4
	농공	76	15	53	7	1

<표 7> 전국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구 분		톤당 처리비용(원)					
		계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기타
'08년도	산단	360	103	55	79	45	77
	농공	896	428	135	111	81	141

<표 8> 전국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별 시설 현황

구 분		톤당 처리비용별 시설 수(개소)						
		계	3,000원 이상	2,000~ 3,000원 미만	1,000~ 2,000원 미만	500~ 1,000원 미만	300~ 500원 미만	300원 미만
'08년도	계	136	15	9	38	43	15	16
	산단	60	6	2	12	21	7	12
	농공	76	9	7	26	22	8	4

<표 9> 전국 산업(농공)단지 시설재투자비 현황

구 분		계	시설 재투자비 시설 수(개소)	
			적 립	미 적립
'08년도	계	136	65	71
	산 단	60	36	24
	농 공	76	29	47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 문제점

- 농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감독으로 같은 시설물에서 업무가 분산되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움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간의 불명확한 업무구분으로 시설관리 업무에 소극적임
- 이러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분쟁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위탁업체 선정 부실 등 문제점 발생
-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는 산업(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져 추후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위한 기업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 후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와 입주기업(위·수탁 운영 시 입주업체협의회) 간의 협약사항에서 시설유지관리비용 부담, 시설 보수비용 적립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산업(농공)단지의 활성화는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소모적인 논쟁이나 쟁점화 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대안 도출이 시급함

2. 개선방향

1)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

- 농공(산업)단지의 유치 및 조성과 운영관리의 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대립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기업유치의 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과 폐수처리에 대한 처리용량에 대한 관리·감독, 기타 환경관련 민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입장이 상반되고 있음
- 농공단지의 조성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농공단지 가동에 의한 시설운영관리는 업무영역이 서로 다르고 부서별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행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행대로 농공(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과 사후유지 및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제한된 인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고려했을 때, 농공(산업)단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위탁업체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고, 시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과 입주업체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농공(산업)단지 시설설치 비용

- 농공단지의 시설설치비는 시군의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장충면적 등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여 농어촌 유형별로 농공단지 조성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음
- 시설설치비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은 우선지원 시군이 국비 100%, 추가지원시군은 국비 70%, 일반 시군은 국비 50%로 설정하고 있

으며, 운영비는 각 시군 책임 하에 결정

- 특히 4대강 사업 시행과정에서 열악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인 및 총질소 등 수질개선시설사업 시 농어촌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전액 국비 지원에 의한 시설 사업이 요구됨
- 이를 통해 시설 설치비용 이외에 향후 위·수탁을 통한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대수선비는 현행 국비 지원이 없으나,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요구하고, 일반적인 운영관리비만 기초자치단체 주관 하에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

<표 10> 충청남도의 시군별 농공단지 국비지원 지정대상 구분

일반 농어촌(5)	추가지원 농어촌(9)	우선지원 농어촌(2)
천안, 아산, 서산, 연기, 당진	논산, 계룡, 공주,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홍성	청양, 태안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농공(산업)단지의 유치 및 조성과 운영관리의 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 상충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적인 행정관리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농공(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과 사후 유지 및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실적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 바람직함
- 따라서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환경보호과 전담요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제한된 인원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시설유지의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농공(산업)단지 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행정기관과 전문업체간의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한 위탁업체에서 전담 관리가 필요

2. 정책제언

1) 전담 조직 및 인력 증원

-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의 업무의 상반됨과 관리부서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부서별 고유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과에 환경직군 담당자를 총정원의 한도이내에서 전담인력으로 변경조정 발령(파견)함으로써 시설설치와 운영으로 이원화된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관리의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하는 대안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할 경우, 환경직 또는 토목직을 총정원의 한도이내에서 전담인력으로 변경조정 발령(파견)이 필요함
- 반면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운영관리의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일원화하는 대안은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이전에 기업유치, 공단조성, 관련 기반시설설치 등이 필요하므로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 농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 부서로의 관련 업무 담당자 변경발령(파견)이 어려울 경우의 대안으로써,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된 전담부서(환경직 또는 토목직)를 신설, 각 부서에서 선발된 인원을 폐수종말처리장에 시설관리감독 요원으로 근무토록 한다면, 위탁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과 시설물 및 폐수관리에 효율적임
- 또한 관리인원 상주로 인해 처리시설 노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당면한 문제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부실도 방지할 수 있음

2) 처리비용 부담 및 위·수탁 협약체결

- 농공단지의 평균 폐수유입률은 58.4%로 전년(58.9%)보다 0.5%p 감소되어 지속적인 폐수유입률 제고대책 추진이 필요한데 폐수유입률 감소는 입주업체의 감소로 보임
- 입주기업에서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업체의 감소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처리단가 상승으로 인한 폐수처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처리비용의 증가는 위탁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폐수처리시설의 전문업체 위탁운영은 협약에 의해 위·수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과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지침, 시설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반영하여 체결하도록 할 수 있음(첨부 참조)
- 현행 분담비율 증가와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반영된다면 입주업체 유치와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끝)

<첨부>

논산시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협약서(안)

논산시·○○산업(농공)단지협의회

논산시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협약서(안)

논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회장은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위탁 운영관리 대상 재산의 명세) 위탁 운영관리 대상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조(위·수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위탁업무의 개시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한다.
②위탁기간은 협약 체결 후 위·수탁업무의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약기간 연장 또는 시설용량의 증감, 위탁대상시설의 추가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시설비 부담 등) ①수설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1. 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2. 비품,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화재 및 풍수해보험

6. 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7. 기타 비용부담 규정으로 정하거나 “갑”이 인정하는 비용

②“을”은 제1항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목적 또는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을”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갑”에게 보고하고 “을”이 교체하도록 한다.

제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을”은 산업단지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재투자적립금을 각각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시설 재투자 적립금은 익월말까지 정산하여 시중은행에 적립 조치한 후 정산서 및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보조) ①“갑”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약은 “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사 결정을 한다.

③“을”은 “갑”이 보조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논산시 보조금관리규칙 및 논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여야 한다. 단, “갑”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제8조(법령의 준수)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업무의 적정관리) ①“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갑”과 협조하여 운영관리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을”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한다.

③처리시설 운영은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관리) ①“을”은 방류수 수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의 규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기준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유입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을”은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영관리의 부실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시설설비 등의 관리) “을”은 인수받은 시설, 설비, 비품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정상상태로 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단, “을”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제12조(사고보고) “을”은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조사 등) ①“갑”은 위탁업무의 성실히 이행 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갑”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실적보고 및 확인) “을”은 매월 위탁업무의 성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밀유지) “을”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을”이 산업단지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갑”은 언제든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해제는 “갑”이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10일이 경과하면 “을”의 의사에 불구하고 자동 해제된다.

③“을”은 전항의 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민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사항의 변경)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로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 논산시장	○○○
“을” ○○임주자협의회	대표 ○○○